

대통령령 제 호

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법 제31조의3에 따라 학교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 경력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⑩ 법 제31조의3제2항의 상당한 사정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.

⑪ 제9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.

제106조의3제3항제1호 중 “법 제31조의2”를 “법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(위원의 선출 등) ① ~ ⑧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9조(위원의 선출 등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 <u>⑨ 법 제31조의3에 따라 학교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 후 보자에 대한 범죄 경력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u>
<u><신설></u>	<u>⑩ 법 제31조의3제2항의 상당한 사 정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운영위 원회규정으로 정한다.</u>
<u><신설></u>	<u>⑪ 제9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 관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가 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.</u>
제106조의3(민감정보 및 고유식 별정보의 처리) ①·② (생 략) ③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 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	제106조의3(민감정보 및 고유식 별정보의 처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

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<u>법 제31조의2</u>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. (생략) ④ ~ ⑬ (생략)	----- -----. 1. <u>법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</u>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④ ~ ⑬ (현행과 같음)
---	--